



제1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1.0 사업시행 우선순위

2.0 기본방침

3.0 단계별 자원확보계획



제 1 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1.0 사업시행 우선순위

본 계획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도정비를 위한 단계별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 및 수도보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1.1-1> 단계별 시행계획

| 구 분 | | 1단계 (2025년) | 2단계 (2030년) | 3단계 (2035년) | 4단계 (2040년) |
|----------------|--------------------------------------------------------------------------------------------------------------------------------------------------------------------------------------------------------------|-----------------------------------------------------|----------------|--------------------------------|----------------|
| 시설 확충 계획 | 배수지 신·증설 | ◦ 배수지 : 1,500m ³ (신) ◦ 송배수관로 : 5.0km | - | - | - |
| | 세 교 | ◦ 배수지 : 1,100m ³ (신) ◦ 송배수관로 : 20.3km | - | - | - |
| | 현 암 | ◦ 배수지 : 500m ³ (신) ◦ 송배수관로 : 5.8km | - | - | - |
| | 가 좌 (공사중) | ◦ 배수지 : 800m ³ (신) ◦ 송수관로 : 1.1km | - | - | - |
| | 사 동 | ◦ 송수관로 : 11.0km | - | - | - |
| | 남 이 | ◦ 송수관로 : 3.7km | - | - | - |
| | 문 동 | ◦ 송수관로 : 6.1km | - | - | - |
| | 내 수 | ◦ 송수관로 : 2.2km | - | - | - |
| | 금천(용정) | ◦ 배수지 : 200m ³ (신) | - | - | - |
| | 문 의 | ◦ 배수지 : 6,000m ³ (신) ◦ 송배수관로 : 3.5km | - | - | - |
| | 광 역 | ◦ 배수지 : 2,000m ³ (증) | - | - | - |
| | 오창산단 송정공업 | - | - | ◦ 배수지:20,000m ³ (증) | - |
| 신규 산업 단지 | ◦ 배수지 : 13개소 ◦ 가압장 : 13개소 ◦ 송수관로 : 69.9km - 신 설 : 오송화장품(생활, 공업) : 옥산2산단(생활, 공업) : 서오창TP(생활, 공업) : 북이산단(생활, 공업) : 오창TP(생활, 공업) : 송정3(공업) : 하이테크밸리(공업) - 증 설 : 옥산산단(생활) 증설 | - | - | - | |

1 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표 계속>

| 구 분 | 1단계 (2025년) | 2단계 (2030년) | 3단계 (2035년) | 4단계 (2040년) | |
|----------------------------|----------------|--------------------------------------------------------------------------------------------------------------------------------------------------------------------------------------------------------------------------------------------------------------------------------------------------------------------------------------------------------------------------------------------------------------------------------------------------------------------------------------------------------------------------------------------------------------------------------------------------------------------------------------|----------------------------------------------------------------------------------------------------------------------------------------------------------------------------------------------------------------------------------------------------------------------------------------------------|-----------------------------------------------------------------------------------------------------------------------------------------------------------|---------------------------------------------------------------------------------------------------------------------------------------------------------------------------------------------------------|
| 시 설 확 충 계 획 | 급수구역 확 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북 : 0.9km ◦ 울량 : 0.4km ◦ 동남 : 7.8km ◦ 현암 : 34.9km ◦ 금천 : 3.8km ◦ 가경 : 0.5km ◦ 휴암 : 2.7km ◦ 남이 : 7.7km ◦ 문동 : 18.5km ◦ 문의 : 2.2km ◦ 가덕 : 20.0km ◦ 강내저지 : 1.9km ◦ 강내궁현 : 11.3km ◦ 세교 : 6.8km ◦ 오창산단 : 4.8km ◦ 오창2 : 1.6km ◦ 오창일신 : 6.0km ◦ 오창성산 : 2.2km ◦ 오송2 : 1.1km ◦ 가좌 : 27.0km ◦ 사동 : 22.8km ◦ 내수 : 1.5km ◦ 옥산가락 : 0.6km ◦ 광역직수 : 0.3km ◦ 개신 : 2.1k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북 : 0.3km ◦ 울량 : 1.1km ◦ 현암 : 16.3km ◦ 휴암 : 0.2km ◦ 남이 : 0.3km ◦ 가덕 : 3.6km ◦ 강내궁현 : 0.4km ◦ 오창일신 : 3.5km ◦ 오창성산 : 7.4km ◦ 오송 : 3.1km ◦ 오송2 : 0.9k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암 : 14.8km ◦ 남이 : 0.9km ◦ 가덕 : 7.1km ◦ 세교 : 1.9km ◦ 오창성산 : 4.1k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량 : 3.0km ◦ 현암 : 64.4km ◦ 휴암 : 2.7km ◦ 남이 : 1.6km ◦ 가덕 : 5.2km ◦ 강내궁현 : 4.1km ◦ 오창성산 : 9.2km |
| 시 설 개 량 계 획 | 노후관 정비 | ◦ 노후관 정비 (L=423km) | ◦ 노후관 정비 (L=108km) | - | - |
| | 현대화사업 | ◦ 관망정비 95km ◦ 블록시스템(소블록) 65개소 | - | - | - |
| | 블록화 계획 | - | ◦ 블록화계획(13개) | ◦ 블록화계획(43개) | ◦ 블록화계획(39개) |
| |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 ◦ 공공상수도 전환 (98개소) | ◦ 공공상수도 전환 (24개소) | ◦ 공공상수도 전환 (20개소) | ◦ 공공상수도 전환 (75개소) |
| | 기타 | ◦ 유량계 설치 : 31개소 | ◦ 배수지 4개소 ◦ 가압장 6개소 | ◦ 배수지 6개소 | - |

<표 계속>

| 구 분 | | 1단계 (2025년) | 2단계 (2030년) | 3단계 (2035년) | 4단계 (2040년) |
|--------------------------------------|----------------|--------------------------------------------------------------------------------------------------------------------------------------------------------------------------------------------------------------------------------|----------------------------------------------------------------------------------------------------------------|------------------------------------------------------------------------------------------------------------------|-------------------------------------------------------------------------------------------------------------------------------------------------------------------------------------------------------------------------------------------------------------------------------------------------------------|
| 상 수 도 시 설 안 정 화 | 관 로 복선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 송수관로 간선 (광역~강내) - D900,L=12.4k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도취수계통 복선화 - D900,L=2.9k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 송수관로 간선 (강내~오창) - D1000,L=12.3k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수지별 관로 복선화 (문동,노동,오창소,강내 저지대,내수,세교,남이,옥산,일신,오송산단,오창산단,울량,개신,가경) - D300~1650,L=52.3km 지북정수장(생활)간선 복선화 (지북~울량분기) - D700,L=9.3km 광역상수도(생활)간선 복선화 (일신~내수) - D300,L=10.5km 생활공업 관로 복선화 (오창~복이산단,강내~옥산,광역~송정3) - D300~1200,L=33.6km |
| | 수도시설 비상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광역-지북정수장 - D1100,L=6.5km 지북정수장-가덕송수 - D450,L=5.7km 남이-현도 연계시설 - D300,L=1.8km 청주일반산단-청주TP 연계시설 - D400,L=1.6km 가경-개신 연계시설 - D500,L=1.2k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량-개신 연계시설 - D600,L=1.4km 지북-개신 연계시설 - D300,L=1.6k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정수장~진천배수지 - D500,L=17.0km 금천-지북 연계시설 - D200,L=0.2km | - |
| 정 보 화 계 획 | 정보화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계획 1식 (통합운영시스템) | - | - | - |
| | 스마트 관망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관망관리 1식 | - | - | - |
| 유 지 관 리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경배수지 등 21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북정수장 | - | - |
| | 기술진단 및 수도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정비기본계획 1식 정수장 기술진단 1식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1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정비기본계획 1식 정수장 기술진단 1식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1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정비기본계획 1식 정수장 기술진단 1식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1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정비기본계획 1식 정수장 기술진단 1식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1식 |

1 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2.0 단계별 소요사업비

전술한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확장, 시설정비 및 기타 계획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총 1,126,355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단계별 소요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표 1.1-2> 단계별 소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1단계 (2025년) | 2단계 (2030년) | 3단계 (2035년) | 4단계 (2040년) | |
|--------|--------------|----------------|----------------|----------------|----------------|---------|
| 총계 | 1,126,355 | 706,172 | 129,021 | 105,944 | 185,218 | |
| 시설확충계획 | 계 | 425,339 | 338,337 | 17,499 | 29,928 | 39,575 |
| | 배수지 신증설 | 227,028 | 210,318 | - | 16,710 | - |
| | 가압장 | 43,936 | 42,301 | 669 | 318 | 648 |
| | 배수관로 | 154,375 | 85,718 | 16,830 | 12,900 | 38,927 |
| 시설개량계획 | 계 | 355,002 | 237,343 | 54,950 | 30,818 | 31,891 |
| | 도수시설개량 | 13,602 | - | - | 6,800 | 6,802 |
| | 송배수시설 개량 | 242,794 | 189,109 | 53,155 | 5,300 | - |
| | 현대화사업 | 46,728 | 46,728 | - | - | - |
| | 블록화 계획 | 49,646 | - | 1,657 | 23,368 | 24,621 |
| | 소규모수도시설 정비 | 1,302 | 450 | 204 | 168 | 480 |
| | 기타 | 930 | 930 | - | - | - |
| 수요관리계획 | 3,500 | 3,500 | - | - | - | |
| 안정화계획 | 계 | 211,910 | 51,094 | 9,866 | 41,198 | 109,752 |
| | 관로 복선화 | 162,089 | 20,892 | 7,492 | 23,953 | 109,752 |
| | 급수분구간 비상공급체계 | 49,821 | 30,202 | 2,374 | 17,245 | - |

<표 계속>

| 구 분 | | 계 | 1단계 (2025년) | 2단계 (2030년) | 3단계 (2035년) | 4단계 (2040년) |
|-----------|----------------|---------|----------------|----------------|----------------|----------------|
| 정보화 계획 | 계 | 104,696 | 62,483 | 42,213 | - | - |
| | 정보화계획 | 4,535 | 4,535 | - | - | - |
| | 스마트 관망관리 | 100,161 | 57,948 | 42,213 | - | - |
| 유지 관리 | 계 | 25,908 | 13,415 | 4,493 | 4,000 | 4,000 |
|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 9,908 | 9,415 | 493 | - | - |
| | 기술진단 및 수도정비 | 16,000 | 4,000 | 4,000 | 4,000 | 4,000 |

3.0 단계별 자원확보계획

3.1 자원조달방안 및 관련법규 검토

3.1.1 자원조달방안 검토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수질환경 기준의 강화에 부응하여 상수도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기업에 의한 시설운영이나 건설의 민간 자본유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추세다. 따라서, 경영의 합리화, 투자재원의 민간자본의 유치, 운영관리의 전문화로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민영화에 의한 투자자원 조달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수도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수혜자 부담금 등 제도적 개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도사업의 민영화가 현재까지는 보편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고 이천시 실정 상, 금회 수도정비에서 민영화 전환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기가 지난하여 지자체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국고보조 방안

국고지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비 재원으로 투자비 총당이 어려운 경우에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행되는 국고보조는 특정 시설물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도시별로 시급을 요하는 투자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시설물별로 일정률을 정하여 지원하기는 어렵다. 또한 부족한 국고재원을 수도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고보조는 기본적으로 시설개량 등 그 투자가 단기적으로 투자효과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 시행한다. 기본적으로 시설확충 투자비는 건전한 수도사업 경영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설확충에 시급을 요하고 근본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국고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천시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술진단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국고 보조 및 국고 용자를 얻도록 한다.

다. 지방비 확충방안

지방비는 급수이익, 일반회계보조 및 외부차입으로 구성된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급수이익이다.

- 급수수익은 최소한 급수비용과 차입금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급수비용에는 시설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는바 적절한 급수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정도의 자금이 내부 유보됨으로써 재투자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시설확충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바 이는 시설투자비에 대한 일정 투자보수를 수도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수도요금에는 투자보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자보수는 운영 중인 시설고정자산의 9%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요금인상 억제로 인하여 투자보수율은 매우 낮다. 따라서, 투자보수를 반영한 적정 수도요금을 책정해 나감으로써 투자비 대한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 일반회계 보조자금은 사업의 지방세수입과 중앙정부의 국세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이천시의 상수도 공급시설 사업의 경우 급수이익에 비하여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어 급수수익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일반회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외부차입금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융자차입과 지역개발공채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으로 구성된다. 지역개발공채 발행은 지역별 소화능력 차이에 따라 달라지며 발행 가능액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일반 금융기관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자율이 재정융자나 지역개발공채 이자보다 매우 높으며 대부분 단기성 차입이다. 지속적인 투자계획 집행에 따라 외부차입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것은 수도사업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차입은 수도사업 재정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낮은 재정융자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라. 민자유치방안

상수도사업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민자유치는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가능하다. 동법 제2조 1항에 의거 사회기반시설 중 수도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09.3. 기획재정부)』상에 기술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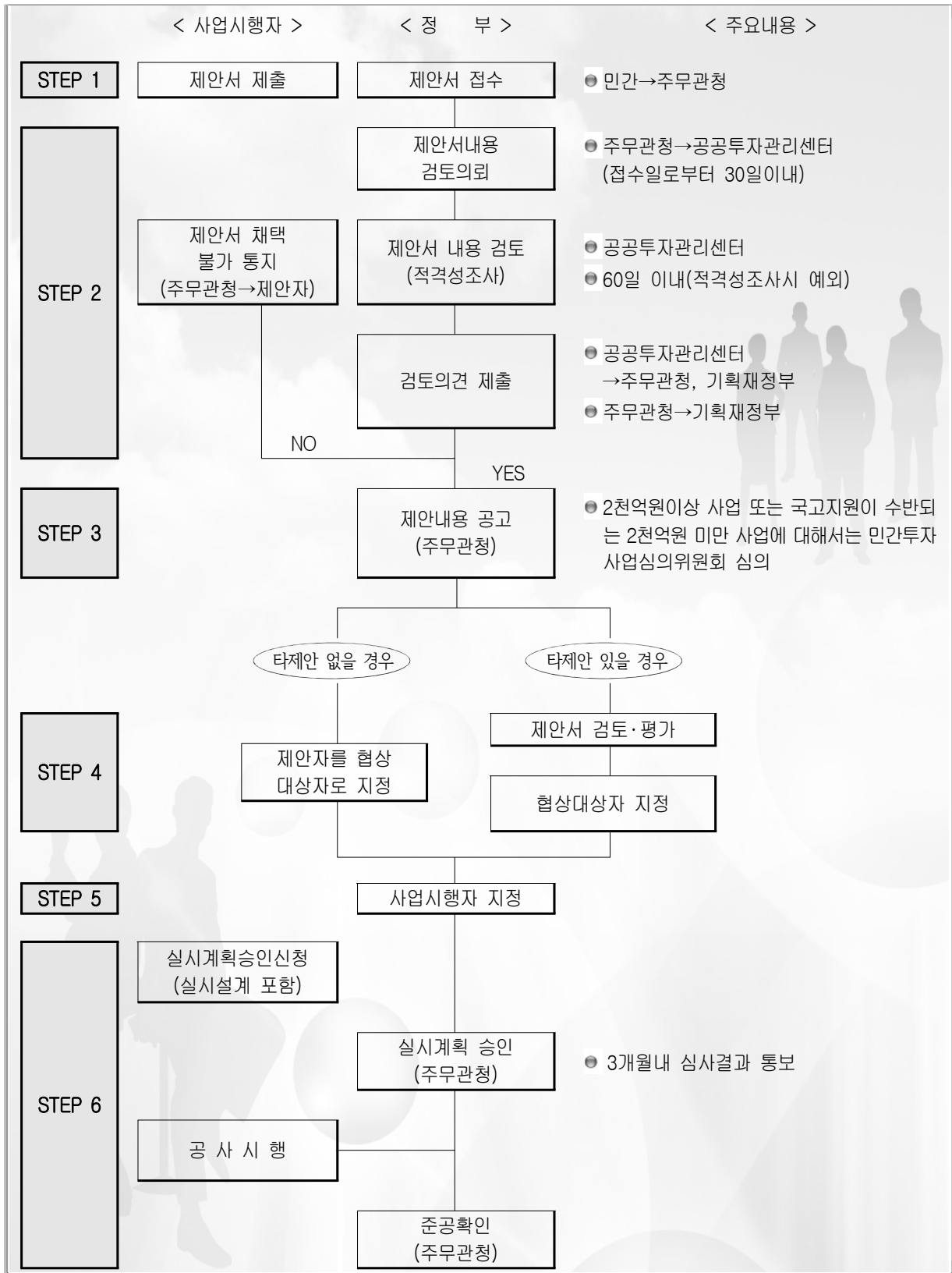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민간부문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BTO, BOT, BOO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 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시 : 교육청이 사립학교시설을 임대형민자사업(BTL)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등)

<그림 2.1-1>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1 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그림 2.1-2>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3.1.2 환경부 예산지원 검토

상수도시설의 정비 및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사항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환경부 상수도사업 예산지원체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금회 수도정비에서는 『-상수도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2020. 3, 환경부)』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계획 기준을 수립하였다.

가. 목적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특)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에서 보조(융자포함)하는 상수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효율을 증진하기 위함

나. 근거 및 범위

-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환경부 고시)」에 따르되, 환경부 수도정책과 소관 상수도 관련 보조(융자) 사업에 한함
 - 유역환경청의 국고보조금 업무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환경부 고시 제2018-21호, '18.1.31)」에 따라 환경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선심제 성격임

다. 기본방향

-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한 시설투자로 계획적인 시설계획 수립·지원
- 수도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 지원
- 인천 붉은 수도물 사고('19.5월)를 계기로 전국 수도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관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실시 지원
-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물 복지 실현을 위해 급수취약지역(도서지역 등)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
- 지방이양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양에서 제외된 상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 이양 사업은 제외하여 예산 요구하되, 이양 사업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신규사업 또는 다

1 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른 계속사업에 반영 금지

※ (이양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식수전용저수지확충,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제주)

- 상수도 사업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 집행률을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
 - (계속사업)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 실적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자체 실집행률 80% 이상 제고를 목표로 편성 추진
 - (신규사업) 지자체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국고지원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하되, 예비타당성조사(면제 포함) 등의 사전행정절차 완료 필요

라. 국고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안) 편성체계

1) 지원대상 사업 및 국고보조(용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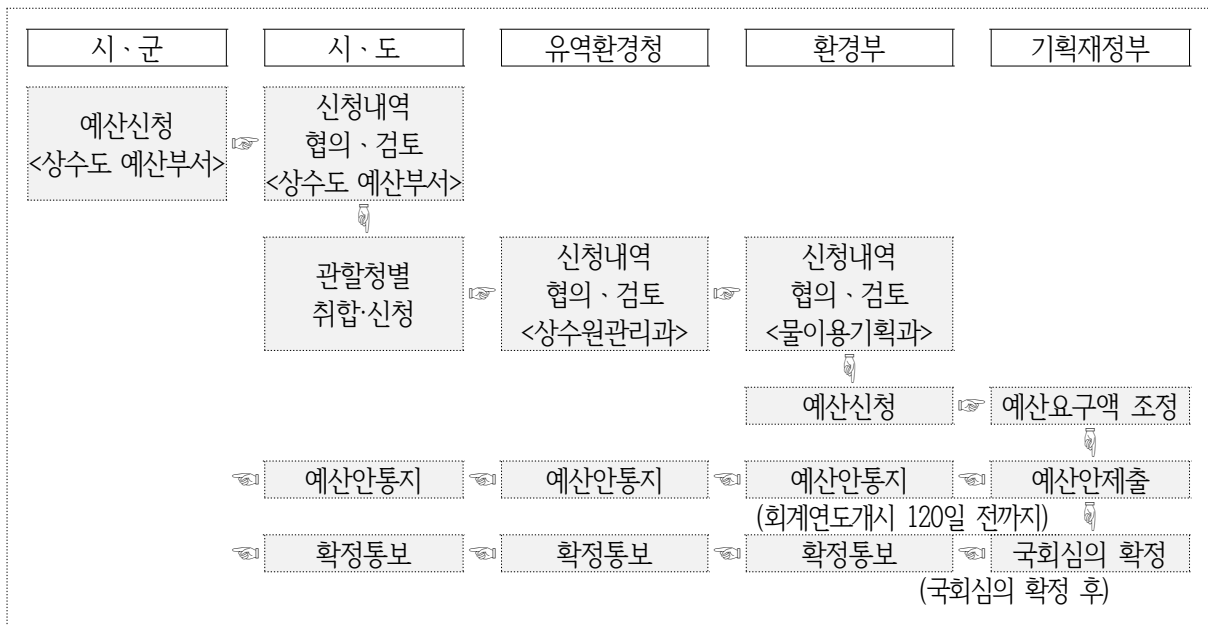
<표 1.3-1> 지원대상 사업 및 국고보조(용자)율

| 사업명 | 형태 | 보조율(%) | 비고 |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 | | |
| - 특·광역시 지역 | 보조 | 50 | |
| - 시·군지역 | | 70 | |
| ○ 노후상수도 정밀조사 지원 | | | |
| - 특·광역시 지역 | 용자 | 50 | |
| - 시·군지역 | | 0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 | | | |
| - 녹조대응 | 보조 (용자) | 30 (50) | |
| - 미량유해물질대응 | 보조 | 50 | |
|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관리·제주·세종) | 보조 | 70 | |
| - 강변여과수개발 | | | |
|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 | | |
|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 | |
|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 | | |
| -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 | | | |
| ○ 노후상수도정비 | | | |
| - 상수관망 정비 | 보조 | 50+20 | |
| - 정수장 정비 | 보조 | 50 | |

자료) -상수도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2020. 3. 환경부)』

주) 국고보조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예산편성 체계



자료) 정부(부처)로부터 정부안 및 확정예산이 통보되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 등록 추진

마. 세부사업별 조건 범위

1) 공통사항

가) 예산신청 제외대상

① 신규사업

-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계획
 - ※ 예산신청 시점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본안) 승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신청 가능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예비타당성조사(면제 포함) 등 사전 이행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
- 상수도 분야 다른 국고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 ※ (사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보조받아 진행중인 사업대상지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신규신청(☞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기존사업의 사업비 변경을 우선 고려)

② 계속사업

- 공사 착공된 계속사업중 '19년도 예산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

1 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나) 예산(안) 편성시 고려사항

- 국고보조금액 산정은 총사업비에서 원인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출
- 국회 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 또는 선심성 사업으로 지적된 업은 신청 제한
- 시설용량은 설치 인가된 시설용량으로 산정하되, 인가가 미완료된 사업은 실시설계 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설용량으로 산정

<주의> 기본계획 승인 및 인가고시가 된 모든 사업이 국고보조 대상은 아님

2)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기준

가) 환경개선특별회계

①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 (추진경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19.5월)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사항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
- (지원대상)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지자체)
 - 보조율 : 특광역시.도 50%, 시.군 70%
 - ※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최종 확정

②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 (추진경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를 계기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 지고 있어 전국 수도관의 실태조사를 위한 정밀조사 예산이 '19년 추경으로 반영 확정('19.8.2.)
- (지원대상)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관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 지원 - 특광역시.도 50%지원, 시.군 70%지원
 - ※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사업기간 1년)
 - ※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19.10., 환경부)'에 따라 조사 실시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① 노후상수도(상수관망 , 정수장) 정비사업 : 별도 지침에 따라 신청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20.1., 환경부)’ 참고
- ②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
 - (지원대상) 취수시설과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 지원
 - ※ 정수장 신설, 확충, 개량 등의 사업비 및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계속사업)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 (신규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한 후 예산 신청
 -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 (지원대상) 원수수질 및 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막여과 포함) 도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원
 - 수질 여건이 미흡하거나 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개량이 필요한 지역의 정수장
 - 특히, 내염소성 병원성 미생물(Giardia, Cryptosporidium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의 제어를 위해 시설도입이 필요한 정수장
 -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환경부, 2013.1.15) 및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119호, ‘12.7.9.)을 준수하여야 함
 - 수원의 수질 및 향후 수질변화 등을 예측·분석하고, 고도처리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처리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
 - (계속사업)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 (신규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 등에 따라 타당성조사와 공법선정이 완료 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 >

1 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 (지원대상) 지방상수도 공급, 수질문제 및 수량 확보를 위한 수원 확보(관정개발 등), 염지하수·해수를 이용한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 담수화 시설, 소규모수도시설 설치·개량 등 도서지역 내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수원 → 취수 → 정수 → 급·배수시설) 설치비용 및 토지보상비
 - ※ 도서 :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과 교량으로 연결된 지 10년 이내인 섬(제주도 본섬 제외)
 - 해수담수화 시설의 경우 대체 취수원개발과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후 신청
- * 지하수 개발, 빗물이용시설, 육상에서 송수관 연결 등과 비교
- (계속사업)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 (신규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생활SOC사업 수요조사('19.2) 시 제출된 사업 우선 반영
- <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 구축사업 >
- (지원대상) 수도시설 사고, 이상가뭄, 수질사고 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인접 수도시설과 연결(지자체 內, 지자체 間, 광역-지방상 수도 間)하는 수도시설간 비상연계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 (계속사업)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 (신규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상수도 공급망 연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보고서(환경부, '15.12.)'에 반영된 사업 우선 신청
- <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 >
- (지원대상) 하천표류수 또는 수량·수질에 문제가 있는 기존 취수원을 대체(보조)하기 위한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 신청
 - 지원내용: 지하수 개발, 지하댐, 인공함양, 인공습지 등 대체취수원 개발 및 취수원 이전 비용(취수원개발, 취수시설, 도수관로에 한함) 지원
- (계속사업)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 (신규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에 한해 지원
- ③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지역지원계정 , 환경부 편성)
 - (사업목적) 수계 내 독성물질 발생 및 냄새민원 등의 문제가 있는 정수장을 고도화하여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
 - (사업개요) 녹조 수계 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시설 미설치 지방 정수장(5개소) 과 낙동강 본류를 직접 취수하는 중·하류 지역 지방 정수장에 대해 한시 사업 추진
 - (계속사업)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바. 예산지원 및 감액기준

1) 계속 및 신규사업

| 구 분 | 지 원 기 준 |
|------|---------------------------------------------------------------------------------------------------------------------------------------------------------------------------------------------------------------------------------------------------------------------------------------------------------------------------------------------------------------------------------------------------------------|
| 계속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공 예정 연도별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완공예정사업 : 완공소요 보조(용자)금 전액지원 - 2022년 완공예정사업 : 잔여 보조(용자)금의 50% - 2023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용자)금의 30% - 2024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용자)금의 20% - 2025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용자)금의 15% - 2026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용자)금의 10% ○ 예산 집행률에 따라 감액기준 적용 |
| 신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은 1차년도 설계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당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이 완료된 사업은 예외적으로 시설공사비 일부 지원 - 선투자한 설계비와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잔여 보조 (용자)금 지원 ○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사업은 사업비 전액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사업기간 1년) |

1 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2) 감액기준

세부사업별 '년말 예산 집행률에 따라 사업비 감액

| 19년말 예산 집행률 | 감액률 | 비 고 |
|-----------------|--------|------------------------------------------|
| 90% 이상 | - | ●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에 따라 '19년 말 집행실적을 적용하여 감액 |
| 70% 이상 ~ 90% 미만 | 10% | |
| 50% 이상 ~ 70% 미만 | 20% | |
| 30% 이상 ~ 50% 미만 | 30% | |
| 10% 이상 ~ 30% 미만 | 50% | |
| 10% 미만 | 예산 미반영 | |

사. 사업비 산정기준

1) 공통기준

- 사업비 산정은 기획재정부「예산(안) 편성 및 작성 세부지침」의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및 감리비 하되 다음 기준을 준수 시설부대비 부분을 참조하여 산정
- 계속사업은 기 협의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완공연도별 예산지원 기준과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연내 전액 집행되도록 차수 계약 준공일정을 마련하여 관행적인 이월이 방지되도록 사업비 산정
 - ※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 감액기준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신청 필요('21년 완공예정 사업에도 동일 적용)
- 신규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물량 및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신청
 - 다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비가 “수도시설 표준운영비 및 공사비 산정(환경부, 2015.12.)” 기준과 불일치 시에는 낮은 금액 으로 신청
 - ※ 실시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총사업비 반영
- 2021년도 완공예정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는 기착공 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 예산신청서에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토지매입비

- 용지보상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쳐 산정

- 토지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감정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는 공시지가 또는 유사사례 집행실적 등을 참조하여 편성

- 지하부분 보상이 필요한 경우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06호)”에 따라 산정

3) 설계비

- 설계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 수요예측, 유사시설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설유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정
-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 적용
 - 예산액을 책정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

4) 시설비

- 토목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시설비 반영
- 계속사업의 경우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비 반영 - 시설비를 반영할 경우 감리비도 동시에 계상
-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집행률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의 소요액에서 감액하여 반영
-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변경요인이 있는 경우 예산 신청 이전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 예산 신청
- 2021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산신청서에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설계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완공예정 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를 전액 반영한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불가

5) 감리비·시설부대비

-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
- 공사감리비는 사업성격, 공정별 필요성 등에 따라 책임감리와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기획재정부의 기준단가 적용

1 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해 시설부대비 총액을 산출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적정수준 계상

3.2 자원조달계획

자원조달계획은 국비, 지방비, 원인가부담금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금회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수도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은 노후관정비(현대화사업) 50% 및 스마트관망관리 70%, 수도 시설 비상연계 70%를 적용하였다.

2040년까지 총사업비 1,126,355백만원 중 국비 164,149백만원(14.6%), 지방비 857,484백만원(76.1%), 원인가부담금 104,722백만원(9.3%)로 계획하였다.

<표 1.3-2> 자원조달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계 | 2025년 | 2030년 | 2035년 | 2040년 | 비 고 |
|----------------|--------|-----------|---------|---------|---------|---------|--------|
| 총 괄 | 계 | 1,126,355 | 706,172 | 129,021 | 105,944 | 185,218 | 100.0% |
| | 국 비 | 164,149 | 150,415 | 1,662 | 12,072 | - | 14.6% |
| | 지방비 | 857,484 | 451,035 | 127,359 | 93,872 | 185,218 | 76.1% |
| | 원인가부담금 | 104,722 | 104,722 | - | - | - | 9.3% |
| 시설확충 | 계 | 425,339 | 338,337 | 17,499 | 29,928 | 39,575 | 100.0% |
| | 국 비 | 90,451 | 90,451 | - | - | - | 21.3% |
| | 지방비 | 230,166 | 143,164 | 17,499 | 29,928 | 39,575 | 54.1% |
| | 원인가부담금 | 104,722 | 104,722 | - | - | - | 24.6% |
| 시설개량 | 계 | 355,002 | 237,343 | 54,950 | 30,818 | 31,891 | 100.0% |
| | 국 비 | 24,765 | 24,765 | - | - | - | 7.0% |
| | 지방비 | 330,237 | 212,578 | 54,950 | 30,818 | 31,891 | 93.0% |
| 수요관리 | 계 | 3,500 | 3,500 | - | - | - | 100.0% |
| | 국 비 | - | - | - | - | - | - |
| | 지방비 | 3,500 | 3,500 | - | - | - | 100.0% |
| 상수도시설 안정화 | 계 | 211,910 | 51,094 | 9,866 | 41,198 | 109,752 | 100.0% |
| | 국 비 | 34,875 | 21,141 | 1,662 | 12,072 | - | 16.5% |
| | 지방비 | 177,035 | 29,953 | 8,204 | 29,126 | 109,752 | 83.5% |
| 정보화 계 획 | 계 | 104,696 | 62,483 | 42,213 | - | - | 100.0% |
| | 국 비 | 14,058 | 14,058 | - | - | - | 13.4% |
| | 지방비 | 90,638 | 48,425 | 42,213 | - | - | 86.6% |
| 유지관리 및 운영개선 | 계 | 25,908 | 13,415 | 4,493 | 4,000 | 4,000 | 100.0% |
| | 국 비 | - | - | - | - | - | - |
| | 지방비 | 25,908 | 13,415 | 4,493 | 4,000 | 4,000 | 100.0% |

주) 국고보조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